

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8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2008년 「상업등기법」 및 「상업등기규칙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‘등·초본’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‘등기사항증명서’로 변경하여 등기기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.

이에 따라, 조례상 융자신청 시 첨부해야할 서류 중 ‘법인등기부등본’을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법인등기부등본’을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개정함(안 제15조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(일부개정안)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6. 4. 14.~2026. 5. 4. [20일간]

나. 의견 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의견없음

나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도시개발국 노후신도시정비과

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”을 “조례는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”으로, “시행규칙 및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”를 “시행규칙 및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비기금 (이하”를 “정비기금(이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112조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112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62조”를 “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94조”로, “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”을 “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”으로, “시 귀속분”을 “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귀속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(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)안”을 “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(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) 안”으로, “제6조의

규정”을 “제6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그밖”을 “그 밖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규정에 의한 재원”을 “제1항에 따른 수입”으로, “해당부서의 부과·징수책임자”를 “부과·징수책임자”로, “수입금액”을 “수입금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법 제36조”를 “법 제61조”로, “제5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95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96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외”를 “밖에”로 한다.

2.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

3.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

제4조제1항 중 ““시장” ”를 ““시장” ”으로, “기금을 시금고”를 “시금고”로, “설치하고”를 “설치하고,”로, “의하여 운용하되, 세입·세출예산외”를 “따라 기금을 운용하되, 세입·세출예산 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”를 “관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”을 “(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”를 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하여 10인”을 “1명을 포함하여 10명”으로 하고, 같은

조 제3항 전단 중 “안전환경국장” 을 “도시주택국장” 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
제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” 을 “제1항부터 제3항” 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7조제2항 중 “개의하며” 를 “개의(開議)하고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5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” 를 “제5조에 따른 위원회” 로, “관한 사항을 심의요구” 를 “관해 심의를 요구하고자” 로, “별지 제7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7호서식의” 로, “심의 요구” 를 “제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” 로, “별지 제8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8호서식의” 로 한다.

제9조 중 “안에서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를 “안에서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기금운용 계획)” 을 “(기금운용계획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“당해연도” 를 “해당연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” 를 “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결산 보고서” 를 “기금결산보고서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개황” 을 “개황(概況)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6월말” 을 “6월 30일” 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기금운용관 :” 을 “기금운용관: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금출납원 :” 을 “기금출납원: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금 관리대장: 별지 제1호서식
2. 기금 출납대장: 별지 제2호서식
3. 융자금 관리대장: 별지 제3호서식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 제3호” 를 “제3조제3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7조의 규정” 을 “법 제7조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8조의 규정” 을 “법 제8조” 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매년도” 를 “매년” 으로, “홈페이지, 시청 게시판” 을 “홈페이지” 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4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4호서식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법인등기사항 증명서

제16조 중 “제15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 접수시” 를 “제15조에 따라 융자신청서 접수 시” 로, “선정 하여 별지 제5호 서식” 을 “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” 로, “통보서에 의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” 를 “통보서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중 “3월” 을 “3개월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허위” 를 “거짓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제1항의 규정” 을 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6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6호서식의” 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예에 의한다” 를 “예를 따른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하남시 재무회계 규칙」” 을 “「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 으로 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주택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주택과장 김경향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공동주택팀장 곽병서 (031-790-540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<u>조례</u> 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<u>조례</u> 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----- ----- <u>시행규칙</u> 및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----- ----- -----.
제2조(기금의 재원) ① 도시 및 주거환경 <u>정비기금</u> 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.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2조(기금의 재원) ① ----- ----- <u>정비기금</u> (이하 ----- ----- -----.
1. 「지방세법」 제112조(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5퍼센트	1. 「지방세법」 제112조----- ----- ----- -----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62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<u>시 귀속분</u> 의 50퍼센트	2. ----- ----- <u>제126조제2항제3호</u> 에 따라 법 제94조----- ----- 「 <u>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----- ----- <u>하남시</u>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<u>귀속분</u> -----
3. 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	3.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

에 의한 정비구역(주택재건축
구역을 제외한다)안의 국유지
매각대금의 시 귀속분 중 20
퍼센트(다만, 국유지의 경우에
는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의
규정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하
여야 한다) 및 공유지 매각대
금의 30퍼센트

4. · 5. (생 략)

6.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
수입

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원이
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과
· 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
기금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
한 수입금액은 즉시 납입한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
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및 목적
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1. 법 제36조 및 「도시 및 주거
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
“영”이라 한다) 제58조의 규
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설치
비

2.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
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

라 정비구역(주택재건축구역
을 제외한다) 안-----

----- 제6조

4. · 5. (현행과 같음)

6. 그 밖-----

② 제1항에 따른 수입-----
----- 부과 · 징수책임자

- 수입금-----.

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

-----.

1. 법 제61조 -----

----- 제53조에 따
른 -----
--

2.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
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

설치비

3.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

4.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관련 국·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

5.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관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

6. ~ 9. (생략)

10.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 ‘이라 한다.)은 기금을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,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② (생략)

③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

3.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

4. 법 제95조에 따른 -----

5. 법 제96조에 따른 -----

6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 밖에 -----
-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--
----- “시장” -----
----- 시금고-----
----- 설치하고, -----
----- 따라 기금을 운용하되, 세입·세출예산 외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
의 설치 및 구성) ① -----

기금 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과장, 도시정책과장, 주택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. 이때 관련전문가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기피할 수 있다.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또한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

-----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-----.

② -----
- 1명을 포함하여 10명 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도시주택국장-----

-. -----

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

은 의결을 회피(回避)할 수 있으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할 경우 해촉 될 수 있다.

<신 설>

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
·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7조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(생 략)

제8조(위원회 심의요구)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요구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기금운용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.

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-----

-----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개의(開議)하고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회 심의요구) ① -----
- 제5조에 따른 위원회-----
----- 관
해 심의를 요구하고자 -----
별지 제7호서식의 -----
----- 제출-----
-----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
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때에는
별지 제8호 서식 기금운용 심의
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참
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
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
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
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
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금운용 계획) ① 시장은
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
수립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
계획에 관한 사항
3. · 4.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
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
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
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기금 결산) ① 시장은 출납
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
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
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----

별지 제8호서식의 -----
-----.

제9조(위원의 수당) -----

----- 안
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
치 및 운영 조례」-----
-----.

제10조(기금운용계획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해당연도 -----

3. ·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기금운
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----

-----.

제11조(기금 결산) ① -----

----- 기금결산
보고서-----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
관한 서류

2. ~ 4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
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
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
다.

제12조(회계공무원) ① 시장은 기
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
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
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주택과장

2. 기금출납원 : 기금운용 관련
업무 담당주사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
기금을 적정하게 운용·관리하
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
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
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
다.

1. 기금 관리대장 : 별지 제1호
서식

2. 기금 출납대장 : 별지 제2호
서식

3. 융자금 관리대장 : 별지 제3
호 서식

1. ----- 개황(概況)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6월
30일-----

-.

제12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

-----.

1. 기금운용관: -----

2. 기금출납원: -----

② -----

-.

1. 기금 관리대장: 별지 제1호서
식

2. 기금 출납대장: 별지 제2호서
식

3. 융자금 관리대장: 별지 제3호
서식

제13조(기금의 용자대상자)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
2.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

제14조(용자계획의 공고)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용자계획을 시보, 인터넷 홈페이지, 시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5조(용자신청 등)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용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용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6. 법인등기부등본
7. (생략)

제16조(용자대상자 선정)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 접수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

제13조(기금의 용자대상자) 제3조 제3호-----

-----.

1. 법 제7조-----

2. 법 제8조-----

제14조(용자계획의 공고) -----
매년 -----

--- 홈페이지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용자신청 등) -----

----- 별지 제4호서식의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법인등기사항 증명서
7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용자대상자 선정) -----
제15조에 따라 용자신청서 접수
시 -----

0일 이내에 용자대상자를 선정
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용자대상
자 선정 통보서에 의하여 용자
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.

제17조(용자취소 등) ① 시장은 용
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용자대상자 결정을 취
소한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
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을 착
공하지 아니한 때
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
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
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
때

② 시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용자원리금을 일시
에 회수한다.

1.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
실이 있는 때

2. ~ 4. (생략)

제18조(변경신고 등) ① 기금을 용
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

----- 선정
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-----
----- 통보서를 용자신청자에
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7조(용자취소 등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3개월 -----

2. 거짓 -----

--

② -----

-----.
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변경신고 등) ① -----

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<u>별지 제6호 서식</u> 용자신청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② (생략) 제20조(관련규정의 준용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<u>예</u>에 의한다.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하남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 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----- ----- <u>별지 제6호서식</u>의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20조(관련규정의 준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</u>를 따른다. ② ----- ----- 「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. <삭 제>
--	---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상업등기법」

[시행 2025. 1. 31.] [법률 제20437호, 2024. 9. 20., 일부개정]

- 제15조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.

2

「상업등기규칙」

[시행 2025. 1. 31.] [대법원규칙 제3170호, 2024. 11. 29., 일부개정]

- 제26조(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)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(이하 “등기사항증명서”라 한다)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1. 29.>
- ② ~ ③ (생략)